

기업의 조직개편 (또는 구조조정) 관련 법제의 이해 II



정문호 전문위원
Tel. 02-2087-7158
jmh@klca.or.kr

최근 법무부에서는 기업 인수·합병 관련 법 제도의 정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시시각각 변모하는 경제현실에 따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업구조의 개편작업에 경영진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 도입될 개정 법제도의 충분히 이해가 필요하다.

다만 새로운 법개정내용은 국회 결의를 거쳐 확정되므로 이후에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 기업 조직개편 법제에 대한 이해를 돋기위하여 지난호 합병제도에 이어 분할제도를 요약하여 안내하고자 한다.^{**}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1. 삼각주식교환, 역삼각합병 및 삼각분할합병 제도의 도입, 2. 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제도 도입, 3. 소규모 주식교환의 요건 완화 등, 4. 반대주주(무의결권 주주 포함)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정비, 5. 분할·합병 관련 규정 정비 등임.

** 이철승교수의 회사법강의, 정준우교수의 상법해설(주식연수 교재 중)을 참조

1. 회사분할제도

1) 의의

회사분할이란 특정한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분리한 후 그 분리된 영업재산을 자본으로 하여 새로운 회사를 신설하거나 또는 다른 회사와 합병시키는 회사의 조직법적 행위를 말한다. 회사분할에 의해 본래의 회사는 완전히 소멸하거나 또는 축소된 상태로 존속하고, 분할회사의 주주는 분할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다.

회사분할제도는 1998년의 개정상법이 세계적 입법추세와 현실적인 필요성을 감안하여 새로이 도입한 것이다.

최근 기업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업조직면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재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대기업이 사업조직을 정비하고 기업경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업을 분할하는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2) 분할의 방법

(1) 인적분할

① 단순분할 : 단순분할이란 회사의 영업을 수개로 분할하고 분할한 영업을 출자하여 한 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신설하는 것을 뜻한다. 상법 제530조의2 제1항은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단순분할이라고 하며 단순분할은 분할회사의 존속여부에 따라 다시 소멸분할과 존속분할로 구분된다.

② 분할합병 : 분할합병이란 회사의 영업을 한 개 또는 호수개로 분할하고 분할한 영업을 존립중의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시키거나 분할한 영업을 가지고 다른 존립 중의 회사와 더불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뜻한다.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은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분할합병은 다시 ① 분할회사의 존속여부에 따라 소멸분합합병과 존속분합합병으로 구분되고, ② 합병의 종류에 따라 흡수분합합병과 신설분합합병으로 구분되는데, 상법은 이 4가지 형태의 상호조합을 인정하고 있다.

③ 신설 및 분할합병 : 위의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분할한 영업의 일부로는 새로운 회사를 신설하고 다른 일부로는 다른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시키는 방법도 가능한데, 이를 상법 제530조의2 제3항은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2) 물적 분할

상법은 신설회사 또는 합병상대방회사의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분할회사가 그대로 소유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물적분할이라고 하여 제530조의12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통 회사분할이란 특정한 회사의 영업을 2개 이상으로 분할한 후에 그 분할의 결과로 신설되는 새로운 회사 또는 합병상대방회사의 신주를 분할회사의 주주들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물적분할을 하게 되면 분할회사의 종전의 주주는 신설회사나 합병상대방회사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다만 분할회사의 주식을 소유를 통해 종전과 다름없는 지분적 가치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3) 분할의 절차

회사분할을 위해서는 분할회사 내에서의 분할을 위한 의사결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상대방회사에서의 의사결정절차도 거쳐야 한다. 한편 단순분할이나 신설통합을 할 때에는 회사를 신설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1) 분할의 의사결정(공통절차)

회사가 분할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분할계획서(단순분할의 경우)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분할합병의 경우)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을 소집통지 또는 소집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530조의3 제4항). 분할의 승인결의를 위한 총회에서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을 가진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상법 제530조의3 제3항). 겨우에 따라서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할 때도 있다(상법 제530조의3 제5항).

또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2항(주주총회의

승인결의) 및 제5항의 결의(종류주주총회)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상법 제530조의3 제6항). 즉 분할을 계기로 주주의 추가출자를 요구할 경우 관련 주주전원의 동의를 요함을 뜻한다.

(2) 단순분할절차

단순분할은 분할회사에서 회사의 분할과 회사의 신설이라는 두 가지 절차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신설통합의 절차는 회사분할을 위한 절차와 회사설립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분할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은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술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다. 분할계획서에는 일정한 법정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상법 제530조의5).

(3) 분할합병절차

분할합병은 분할회사의 분할과 회사의 합병이라는 두 가지 절차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회사분할을 위한 절차와 회사합병을 위한 절차는 분할회사와 합병할 상대회사의 대표기관간에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합체되어 행해진다. 분할합병계약서는 흡수분할합병을 하느냐 신설통합합병을 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한다(상법 제530조의6).

4) 채권자보호절차

(1) 단순분할

단순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이 감소하는 외형을 보이지만, 신설회사들이 분할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므로 책임재산에는 변동이 없고 책임주체에도 실질적인 변동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법은 단순분할의 경우에 채권자보호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단순분할의 경우에도 신설회사의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는 책임주체에 변동이 생기는 까닭에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한다(상법 제530조의9 제4항).

(2) 분할합병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합병의 양당회사의 채권자가 책임재산을 공유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채권자로서는 담보재산과 책임주체에 관한 중대한 변화이다.

그러므로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양당사회사의 채권자보호가 요구된다. 상법은 합병의 경우에 관한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527조의5)를 분할합병에 준용하고 있다(상법 제530조의11제1항). 제530조의11 제1항은 분할회사에만 준용되는 것이 아니고,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의 채권자보호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양 회사에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5) 주식매수청구권

상법은 단순분할의 경우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상법 제530조 제2항 → 제522조의3).

즉 단순분할의 경우에는 종전의 회사재산과 영업이 물리적으로 나누어질 뿐 주주의 권리는 신설회사에 그대로 미치므로 주주의 권리에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과 영업이 다른 회사와 통합되므로 주주의 관점에서는 합병과 똑같은 구조변화이다. 따라서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6) 분할회사 채무의 승계와 책임

(1) 채무의 승계

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는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에 의해 특정된 채무를 인수한다(상법 제530조의10).

합병의 경우에는 법인격이 합일되므로 피합병회사의 모든 채무를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포괄승계하지만, 회사분할에는 이러한 채무의 포괄승계가 없다.

(2) 연대책임

상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30조의9제1항).

이는 분할당사회사간의 채무승계가 여하히 이루어지든 분할전의 채권자가 분할 전의 책임재산이 감소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3) 책임의 제한

분할계약서 내용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는 때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한다고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은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조 제3항에서는 흡수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 역시 분할회사의 결의로 상대방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상대방회사에 이전한 재산에 관한 것으로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는 분할당사회사들이 승계한 채무의 내용에 관계없이 분할전 분할회사의 모든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지만, 분할당사회사들이 각기 승계한 채무에 관해서만 분할책임을 질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